#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국세청, **2**020. 12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 자이고
  -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 이며.
  -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 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 2020년 명단 공개 개요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rightarrow$  정보공개  $\rightarrow$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 '20. 11. 12.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 국세정보위원회는 명단공개 대상자 중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상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을 공개 대상자로 최 종 선정하였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심의대상 모두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올해는 공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 (연도별 공개인원) '14년 1명, '15년 1명, '16년 2명, '17년 1명, '18년 1명, '19년 1명
- □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 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 납자로,
    - \* ('04) 기간 2년·금액 10억 이상 → ('10) 2년·7억 → ('12) 1년·5억 → ('16) 1년·3억 → ('17) 1년·2억
  -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국세정보위원회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11.12.)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6,965 명을 확정하였습니다.
-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 ('19) 7,702명, 59,995억 원 → ('20) 7,624명, 55,178억 원
-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하 였습니다.
  - \* 공개제외 659명 (개인 426명, 법인 233개 업체)
- □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633명, 법인 2,332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 8,203억 원입니다.
  -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176억 원(이성록, 44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60억 원((주)하 원제약, 제조업)입니다.
  -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127명이 증가하였으나,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감소\*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5,87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 \* ('19) 42명, 8,939억 원→ ('20) 28명(14명 ↓), 6,946억 원(1,993억원↓)
- \*\* ('19) 6,838명, 54,073억 원→ ('20) 6,965명(127명 ↑), 48,203억 원(5,870억원↓) 〈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명, 억 원, %)

구분	7.	1	개	인	법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6,965	48,203	4,633	33,417	2,332	14,786	
비율	100.0	100.0	66.5	69.3	33.5	30.7	

○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대상은 4,732명·1조 6,114억 원으로 전체 명단공 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67.9%, 32.5%를 차지합니다.

### 〈 체납액 구간별 현황 〉

(명, 억원, %)

구분	계	2억	5억	10억	30억	50억	100억
	세	~5억	~10억	~30억	~50억	~100억	이상
인원	6,965	4,732	1,485	601	75	44	28
비율	100.0	67.9	21.4	8.6	1.1	0.6	0.4
체납액	48,203	16,114	10,020	9,327	2,774	3,021	6,947
비율	100.0	32.5	20.2	18.8	5.6	6.1	16.8

- □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명단공개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입체 지도로 시각화하여 공개하며,
  - 국세청·행정안전부(위택스)·관세청 누리집을 서로 배너로 연결하여 한 곳만 방문하여도 국세, 지방세 및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 공개

- □ 명단 공개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 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이며,
-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 불이행 내역 등입니다.
- □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 기부금 영수증 발

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5개 등 총 79개 단체가 공개됩니다.

-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6개(84%)이며 의료법인 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입니다.
-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수수료를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 발급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 하고,
  -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 명단 공개대상은 법 시행일('12.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로,
  - \*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기수시기: '12. 7. 1.~'16. 6.30.) 5억 원 (기수시기: '16. 7. 1.~'16.12.31.) 3억 원 (기수시기: '17. 1. 1.~ 현재) 2억 원

- 공개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입니다.
- □올해 공개대상은 '19.7.1.부터 '19.12.31.까지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 시기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총 35명으로, 작년에 비해 1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 공개대상이 감소한 것은, 공개예정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 통지 제도를 올해 첫 시행하면서 한시적으로 공개대상 기간을 조정\*(1년→6개월)하였기 때문입니다.
    - \* (작년까지 : 1년) 전년도(공개연도 기준) 하반기~공개연도 상반기 → (올해 : 6개월) 전년도 하반 기 → (내년 이후 : 1년) 전년도 전체
- □ 공개대상자 35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0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4명에게 징역형(집행유예 25명, 실형 9명)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 \* 포탈세액 합계(35명): 681억 원, 최고 포탈세액: 199억 원
  - 공개대상자들은 매출 등을 숨기기 위해 장부(회계프로그램 포함)를 조작·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고의적·적극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1 -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 고액 · 상습체납자

-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및 항목)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
  - (공개 제외 대상) ①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②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③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 공개 절차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 (연초)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 (6개월 이상)
-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연말)

#### □ 공개 방법

○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 불성실 기부금단체

-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 인 경우
    -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간 의 「소득세법,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 고 있지 아니한 경우

-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 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 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교 등)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 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 (공개항목)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 불이행 내역 등
- (공개제외)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인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공개 절차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 (연초)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 (6개월 이상)
-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연말)

#### □ 공개 방법

○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 조세포탈범

- □ 명단 공개 법령(「국세기본법」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 '12.7.1. 이후「조세범 처벌법」등에 의거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연간 포탈 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 \*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기수시기 : '12. 7. 1.~'16. 6.30.) 5억 원 (기수시기 : '16. 7. 1.~'16.12.31.) 3억 원 (기수시기 : '17. 1. 1.~ 현재) 2억 원

- (공개항목)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 (공개제외)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항목)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 (공개제외) 수정(기한 후) 신고한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공개 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 붙임 2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유형별 현황

- ◇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된 연령대와 거주지역은 40~50대, 경기·서울·인천등 수도권이며, 체납액 구간으로는 2억~5억 원 구간이 가장 많음
- ◇ 법인의 경우 주로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체납액 구간은 2억~5억 원 구간, 업종은 도소매업·서비스이 가장 많음.
- □ 개인 명단공개자: 4.633명
- 개인 명단공개자 중 2,759명(59.5%)이 40~50대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 72억 원 (60.0%)입니다.

#### 〈 연령별 현황 〉

(명, 억원, %)

구분	계	30대 이하	40EH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인원	4,633	417	1,207	1,552	1,021	310	126
비율	100.0	9.0	26.0	33.5	22.0	6.7	2.8
체납액	33,417	3,138	9,633	10,439	7,212	2,104	891
비율	100.0	9.4	28.8	31.2	21.6	6.3	2.7

○ 개인 명단공개자 중 2,626명(56.7%)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의 체납액은 2조 621억 원(61.8%)입니다.

# 〈 거주 지역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원	4,633	117	1,470	272	211	100	159	121	270
비율	100.0	2.5	31.7	5.8	4.5	2.2	3.4	2.6	5.8
체납액	33,417	599	11,314	1,488	1,283	683	897	1,200	1,740
비율	100.0	1.8	33.9	4.5	3.8	2.0	2.7	3.6	5.2

구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인원	832	21	88	324	106	137	60	221	124
비율	18.0	0.5	1.9	7.0	2.3	3.0	1.3	4.8	2.7
체납액	7,340	123	470	1,967	653	1,080	764	1,198	618
비율	22.0	0.4	1.4	5.9	2.0	3.2	2.3	3.5	1.8

○ 개인 명단공개자 중 3,087명(66.6%)이 체납액 2억~5억 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의 체납액은 1조 563억 원(31.6%)입니다.

# 〈 체납액 구간별 현황 〉

(명, 억원, %)

	구분 7	게	2억	5억	10억	30억	50억	100억
		계	~5억	~10억	~30억	~50억	~100억	이상
	인원	4,633	3,087	1,038	404	56	29	19
	비율	100.0	66.6	22.4	8.7	1.3	0.6	0.4
	체납액	33,417	10,563	6,997	6,183	2,053	2,024	5,597
	비율	100.0	31.6	20.9	18.5	6.1	6.1	16.8

□ 법인 명단공개자: 2,332개 업체

○ 법인 명단공개자 중 1,456개 업체(62.5%)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704억 원(65.6%)입니다.

# 〈 소재지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원	2,332	41	799	108	79	43	66	35	101
비율	100.0	1.8	34.3	4.7	3.4	1.8	2.8	1.5	4.3
체납액	14,786	203	4,365	807	393	261	375	161	547
ll월	100.0	1.4	29.5	5.5	2.7	1.8	2.5	1.1	3.7

구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인원	514	16	79	143	49	64	36	96	63
ll월	22.1	0.7	3.4	6.1	2.1	2.7	1.5	4.1	2.7
체납액	4,334	83	517	1,005	294	354	197	605	285
비율	29.3	0.6	3.5	6.8	2.0	2.4	1.3	4.1	1.8

○ 법인 명단공개자 중 1,645개 업체(70.6%)가 체납액 2억~5억 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550억 원(37.5%)입니다.

# 〈 체납액 구간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10억	30억	50억	100억
	계	~5억	~10억	~30억	~50억	~100억	이상
인원	2,332	1,645	447	197	19	15	9
비율	100.0	70.6	19.2	8.4	0.8	0.6	0.4
체납액	14,786	5,550	3,023	3,144	721	997	1,351
비율	100.0	37.5	20.4	21.3	4.9	6.7	9.2

○ 법인 명단공개자 중 942개 업체(40.4%)의 주 업종은 도소매, 서비스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6.535억원(44.2%)입니다.

# 〈 업종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도소매	서비스	건설	제조	부동산	기타
인원	2,332	434	508	464	481	331	114
ll월	100.0	18.6	21.8	19.9	20.6	14.2	4.9
체납액	14,786	3,944	2,591	2,732	2,594	2,309	616
비율	100.0	26.7	17.5	18.5	17.5	15.6	4.2